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13
----------	-----

2021. 9. 7.(화)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: 김영주 의원

나. 발의일자: 2021년 8월 25일

다. 회부일자: 2021년 8월 27일

라. 상정일자: 2021년 9월 3일

(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김영주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에 따라 등교뿐만 아니라 학교급식,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내·외의 교육활동 운영이 제약을 받고 있어 이와 같은 교육적 피해에 대하여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“교육재난”의 정의에 정상적인 교육활동 운영에 제약을 받아 발생한 교육적 피해를 추가함 (안 제2조)
-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에 국가 또는 교육감의 재난대응 지침 등에 따라 학교 내·외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운영에 제약을 받은 학교의 학생을 추가함 (안 제5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서성범)

- 본 조례 개정안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등교뿐만 아니라 학교급식,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내·외의 교육활동 운영에 제약을 받은 교육적 피해에 대하여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안 제2조에서는 “교육재난”의 정의를 ‘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가 불가능하여 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학습권과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 등의 교육적 피해’에서 ‘등교가 불가능하거나 학교급식, 현장체험학습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 운영에 제약을 받아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학습권과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 등의 교육적 피해’로 확대하였고, 안 제5조에서는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‘국가 또는 교육감의 재난대응 지침 등에 따라 학교 내·외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운영에 제약을 받은 학교의 학생’을 추가하였음.
- 본 조례 개정안은 교육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인 교육적 피해를 휴

업 등으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받지 못한 경우에서 학교급식이나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에 제약을 받은 경우까지로 확대하여 교육재난 대응과 극복에 교육감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취지나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
-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가 불가능하여 대면수업 등” 을 “등교가 불가능하거나 학교급식, 현장체험학습 등 정상적인 교육 활동 운영에 제약을 받아” 로 한다.

제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국가 또는 교육감의 재난대응 지침 등에 따라 학교 내·외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운영에 제약을 받은 학교의 학생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“교육재난”이란 재난 발생으로 <u>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가 불가능하여 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학습권과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의 교육적 피해를 말한다.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제5조(지원 대상)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 <u>등교가 불가능하거나 학교급식, 현장체험학습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 운영에 제약을 받아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지원 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국가 또는 교육감의 재난대응 지침 등에 따라 학교 내·외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운영에 제약을 받은 학교의 학생</u></p>

관계 법령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[시행 2021. 6. 23.] [법률 제17698호, 2020. 12. 22., 일부개정]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재난"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소행성·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

다. 삭제 <2013. 8. 6.>

□ 초·중등교육법

[시행 2021. 6. 23.] [법률 제17664호, 2020. 12. 22., 일부개정]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 <개정 2019. 12. 3.>

1. 초등학교
2. 중학교 · 고등공민학교
3. 고등학교 · 고등기술학교
4. 특수학교
5. 각종학교

[전문개정 2012. 3. 21.]

제64조(휴업명령 및 휴교처분)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.

③ 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라 휴업한 학교는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, 제3항에 따라 휴교한 학교는 휴교기간 중 단순한 관리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.

[전문개정 2012. 3. 21.]

□ 유아교육법

[시행 2021. 6. 23.] [법률 제17661호, 2020. 12. 22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<개정 2010. 3. 24., 2012. 3. 21.>

1. "유아"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.
2. "유치원"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.
3. "보호자"란 친권자·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

하는 자를 말한다.

4. 삭제 <2012. 3. 21.>

5. 삭제 <2012. 3. 21.>

6. "방과후 과정"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.

제31조(휴업 및 휴원 명령)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원장은 지체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.
<개정 2010. 3. 24.>

③ 관할청은 원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원 처분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3. 24.>

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휴업된 유치원은 휴업기간 중 해당 유치원에서 교육받는 유아의 등교와 교육이 정지되며, 제3항에 따라 휴원된 유치원은 휴원기간 중 단순한 관리업무 외에 유치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. <개정 2010. 3. 24.>

□ 교육기본법

[시행 2021. 3. 23.] [법률 제17954호, 2021. 3. 23., 일부개정]

제3조(학습권)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,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제27조(보건 및 복지의 증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21.>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08. 3. 21.> 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조례 개정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적 피해의 범위가 확대되므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이 조례 개정안은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적 피해의 범위가 확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소요비용은 충청북도교육감이 편성한 예산안에 따라 확정되게 되므로 기술적으로 구체적인 비용의 추계가 곤란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.